



협회 일보



제 836 호

2024.8.7.(수)

2024 세법개정(안) 주요 내용 안내

◇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 활력 적극 지원

지난 7.25일 발표된 2024년도 세법개정(안)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,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또는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- [주요내용]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

< 현행 >

구 분	공제액 (단위:만원)			
	중소(3년)		중견(3년)	대(2년)
	수도권	지방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그 외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
⇒

구 분	공제액 (단위:만원)	
	중소	중견
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	1,300	900
육아휴직복귀자(1년 지원)		

< 개정안 >

구 분	공제규모 (단위:만원, %)				
	중소	중견	대	%	
					수도권
■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	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자 등	2,200	2,400	1,200	400
	그 외 계속고용	1,300	1,500	700	-
■ 탄력 고용	임금증가율 3% ~ 20%	증가분의 20%		10%	-
	임금증가율 20% 초과	20% 초과 증가분의 40%		20%	

건설기계 처분이익 과세 관련 특례 신설

- [주요내용]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

< 현행 >

- 건설기계(18년 이후 취득)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

⇒

< 개정안 >

-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(1,000만원 초과분 대상) 3년 분할 과세

채용시 세제지원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

- [주요내용]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인 경력 단절자 범위 확대

< 현행 >

- (성별) 여성
- (업종)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
- (퇴직사유)
 - 결혼·임신·출산 및 자녀교육
 - 육아(8세 이하 자녀)
- (퇴직기간)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

⇒

< 개정안 >

- (업종) 1년 이상 근무
- (퇴직사유)
 - 결혼·임신·출산 및 자녀교육
 - 육아(8세 이하 자녀)
 -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
 - 가족구성원 돌봄(고령·장애 직계존속)
- (퇴직기간)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

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
- [주요내용]
 -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
 - 세무대리인·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

세무대리인	300만원 → 200만원
세무법인	750만원 → 500만원